

의안번호	2200200
의 퇴 인	임이자 의원
회 답 일	2024.6.19.
추 계 번호	24B048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5억 7,300만원~125억 8,700만원(연평균 3억 1,500만원~25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 시나리오1: 2025년 3억 100만원, 2029년 3억 2,8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2: 2025년 12억 600만원, 2029년 13억 1,2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3: 2025년 24억 1,200만원, 2029년 26억 2,4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안 제22조의2)	시나리오1	301	308	315	321	328	1,573	315
	시나리오2	1,206	1,232	1,258	1,285	1,312	6,293	1,259
	시나리오3	2,412	2,465	2,517	2,570	2,624	12,587	2,517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의2 신설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등에 대한 특 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다) 또는 손자회사(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3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와, 또는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공동출자법인이 제2조제8호 및 제22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아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것 2.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할 것 3.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중 하나의 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4. 공동출자법인은 다른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2	안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의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2. 제2조제8호, 제22조의2(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으로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한한다)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2조의2 신설(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	○	—
2	안 제22조의5(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인증 및 인증취소)	—	○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력으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신청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의 증가로 인한 추가재정소요임
 -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²⁾은 사업주에 대하여 상시 고용 근로자의 3.1%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모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각각 출자한 비율만큼 장애인 표준사업장 고용인원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³⁾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2024.3. 기준, 단위: %)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2	2.2	2.1	2.1	2.1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하여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한다.

1.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그 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버린다)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다만,

- 그러나 현행법상 계열회사 간은 공동출자 할 수 없기 때문에⁴⁾ 계열회사 단독으로만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함
-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 및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의 특례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므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고용노동부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⁵⁾”을 시행하고 있음⁶⁾
 - (사업목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비용 지원
 - (사업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사업주
 - (사업내용)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투자금액의 3/4에 해당하는 지원금 무상지원
 - (시행주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기추진 중인 재정사업의 확대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신청 물량 증가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통해 무상지원금을 배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신청이 증가하더라도 재정지출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이러한 요인에 의한 제약은 없는 것으로 가정
 - 또한 자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모회사가 확대되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사업주 신청 물량’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으로 자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모회사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가정함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둘 이상의 사업주 중 제3항에 따른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주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수를 실질적 지배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5) 코드: 1453-304

6)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1453-304)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설치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시스템 개편, 사업운영 및 판매활동 지원 등을 수행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을 토대로 산출

- (지원단가) 2024년 계획액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단가(2억 9,500만원⁷⁾)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 (신청규모) 현시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신청 물량은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시나리오별로 가정함⁸⁾
 - 2024년 예산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 자회사형, 컨소시엄형으로 구분되며⁹⁾, 연간 172개(2개 컨소시엄형, 170개 일반형과 자회사형)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임
 - ※ 컨소시엄형: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 투자를 통해 설립하는 사업장
 - ※ 일반형: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 7년 이상으로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 ※ 자회사형: 일반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 중 '모회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말함

[표 2] 2024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계획액 산출내역

○ 장애인표준사업장: 52,075백만원
1) 2개소(컨소시엄형) × 1,000백만원 = 20억원
2) 170개소(일반및자회사) × 295백만원 = 501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인증 및 운영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해당함
- 본 추계서에서 추가재정소요의 산출 대상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이는 모회사가 표준사업장(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해당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모회사에 산입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의미함
- 본 추계서에서의 물량은 2024년 계획 기준 물량은 170개이므로, 이를 2023년 기준 일반형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원 비율(74:64)로 나누어 산출

7) 일반 및 자회사형 기준

8) 사업장의 수는 반올림으로 산출

9) 2023년 이전에는 3가지 이외에 다른 유형(창업자금형, 사회적경제형)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있음

[표 3] 2023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명)

구 분	사업체수	지원금액	평균지원금액	장애인 고용의무
일반	74	19,132	259	657
자회사형	64	15,733	246	547
사회적경제	11	2,672	243	93
창업자금	20	1,000	50	40
계	169	38,537	798	1,337

주 사회적경제형은 사회적경제기업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3년 이내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인증 포함)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전환을 전제로 창업자금 등을 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 시나리오1: 2024년 지원 물량(79개)에서 매년 1% 증가
- 시나리오2: 2024년 지원 물량(79개)에서 매년 5% 증가
- 시나리오3: 2024년 지원 물량(79개)에서 매년 10% 증가

[표 4] 지원단가 및 신청규모 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지원단가		301	308	315	321	328
신청규모	시나리오1	1	1	1	1	1
	시나리오2	4	4	4	4	4
	시나리오3	8	8	8	8	8

주: 사업장의 수는 반올림으로 산출

□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완화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의 신청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 시나리오1: 2025년 3억 100만원, 2029년 3억 2,8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2: 2025년 12억 600만원, 2029년 13억 1,200만원으로 추계
- 시나리오3: 2025년 24억 1,200만원, 2029년 26억 2,400만원으로 추계

[표 5]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시나리오1	301	308	315	321	328	1,573	315
시나리오2	1,206	1,232	1,258	1,285	1,312	6,293	1,259
시나리오3	2,412	2,465	2,517	2,570	2,624	12,587	2,517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V.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assembly.go.kr